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703
----------	-------

발의연월일 : 2025. 7. 24.

발 의 자 : 정일영·박선원·허종식
강득구·이상식·문금주
박용갑·서영교·이성운
황명선·이병진·한민수
박해철·조계원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3D프린터, 조립형 키트, 온라인 설계도 영상 시청 등을 활용해 총포를 비허가로 제작하는 이른바 ‘사제총기’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관련 범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총포’의 개념은 정의하고 있으나, 제조 허가 없이 제작된 총포(사제총기)에 대한 정의와 직접적인 제작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은 ‘사제총기’의 정의를 법률에 명시하여 법적 개념을 명확히 하고(안 제2조), 개인이 인터넷 등을 통하여 사제총기 제조 방법 등을 게시·유포할 경우 그 처벌을 강화하고(안 제8조의2), 사제총기를 직접 제작·조립·가공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며, 위반

시 해당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며(안 제19조의2 신설), 외국인이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총기 유포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역외범 조항(안 제19조의3 신설)을 신설함으로써 사제총기 제작과 유통 등이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사전적 예방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조제8항 신설 등).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⑧ 이 법에서 “사제총기”란 총포의 제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이 직접 조립하거나 개조하거나 3D 프린터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기술적 수단 등을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제작한 총포를 말한다.

제8조의2 제6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6목 외의 부분) 중 “총포”를 “총포(사제총기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의 행위는 해당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사실만으로도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로 추정하며, 이를 반복하려는 자는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해당 정보가 테러·조직범죄 등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사제총기의 제작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제조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직접 제작·조립·가공하거나, 3D프린터·기계장비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기술적 수단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제8조의2(인터넷 등을 통한 총포 등의 유포 금지)에 따른 정보 유포 행위와는 별도로, 타인을 위해할 목적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실제 물리적 제작행위 그 자체를 금지하고 처벌하기 위한 것이다.

③ 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제작 목적이 테러, 강력범죄 등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9조의3(역외범에 대한 적용) ①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외국에서 행하여졌더라도,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내에서 실행되었거나 그 결과가 대한민국에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대한민국 국민 또는 국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총포 또는 화약류를 이용한 위해 행위를 유발한 경우
2. 총포 또는 그 부품의 설계도, 조립정보, 제작파일 등을 국내에 허가 없이 게시·전송·제공한 경우
3. 사제총기 제작 목적의 총포 부품 또는 정보 등을 국내로 허가 없

이 유통·전달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은 외국인이 행한 행위에도 적용되며, 관할 수사 기관은 국제형사사법공조 또는 외교적 절차를 통하여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 ⑦ (생략)	제2조(정의) ① ~ ⑦ (현행과 같음)
<u><신 설></u>	<u>⑧ 이 법에서 “사제충기”란 총포의 제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이 직접 조립하거나 개조하거나 3D 프린터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기술적 수단 등을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제작한 총포를 말한다.</u>
제8조의2(인터넷 등을 통한 총포·화약류 제조방법 등의 게시·유포 금지) 누구든지 <u>총포·화약류</u>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제73조 제1호의2에서 같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의2(인터넷 등을 통한 총포·화약류 제조방법 등의 게시·유포 금지) ① ----- <u>총포(사제충기를 포함한다)</u> ----- ----- ----- ----- ----- ----- ----- ----- ----- -----.
<u><신 설></u>	<u>② 제1항의 행위는 해당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사실만으로도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u>

<신 설>

<신 설>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로 추정
하며, 이를 번복하려는 자는 정
당한 사유를 입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해
당 정보가 테러·조직범죄 등
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9조의2(사제총기의 제작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총포·도검·
화약류 등의 제조에 관한 허가
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
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직접
제작·조립·가공하거나, 3D프
린터·기계장비 또는 기타 이
에 준하는 기술적 수단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제8
조의2(인터넷 등을 통한 총포
등의 유통 금지)에 따른 정보
유통 행위와는 별도로, 타인을
위해할 목적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실제 물리적 제작행위
그 자체를 금지하고 처벌하기

<신 설>

위한 것이다.

③ 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제작 목적이 테러, 강력범죄 등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9조의3(역외범에 대한 적용)

①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외국에서 행하여졌더라도,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내에서 실행되었거나 그 결과가 대한민국에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대한민국 국민 또는 국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총포 또는 화약류를 이용한 위해 행위를 유발한 경우

2. 총포 또는 그 부품의 설계도, 조립정보, 제작파일 등을 국내에 허가 없이 게시·전송·제공한 경우

3. 사제총기 제작 목적의 총포

	<u>부품 또는 정보 등을 국내로</u> <u>허가 없이 유통·전달한 경우</u> ③ 제1항 및 제2항은 외국인이 <u>행한 행위에도 적용되며, 관할</u> <u>수사기관은 국제형사사법공조</u> <u>또는 외교적 절차를 통하여 관</u> <u>련 조치를 취할 수 있다.</u>
--	--